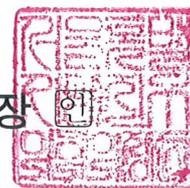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-66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·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12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

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·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243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4.

발 의 자: 이동길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하며,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안 제3조)
- 다. 정책지원관의 근무 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및 직무제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- 마.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9조)
- 사. 의원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
(참조: 의회사무국장, 전화: 02-450-2843, 팩스: 02-454-0438,
전자메일: kimda51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